

이란 투자 · 경제 및 기술 지원기관 (OIETAI)

2002년 제정

최종판·

Iran Legal Advocacy Foundation
Majd Edalat legal Institute

Unit 10, 4th Floor, No.116, 32nd St., Sa'adat Abad, Tehran, Iran
Tel: +9821 88681856
Fax: +9821 88582580

www.Iranvekalat.net
www.vakiliran.co
www.en.vakiliran.co

info@vakiliran.co
info@iranvekalat.net

이 책자는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민영화 기구(IPO)의 후원 하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발간되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원에서 맡았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2002년 제정

제목 :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발행기관 : 재정경제부 이란 투자·경제
및 기술 지원기관 (OIETAI)



목차

	<u>페이지</u>
머리말	i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FIPPA)	1
정의	2
해외 자본 허가에 관한 일반조건	3
주무 관청	5
해외 자본에 대한 보증 및 이전	6
해외 자본의 허가, 유치 및 본국 송환에 관한 규정	7
분쟁 해결	9
최종 조항	10
FIPPA의 시행규칙	12
정의	13
허가를 받기 위한 투자 방법 및 기준	14
허가 제도	18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19
해외 자본의 유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조항	21
자본 및 자본 수익의 본국 송환에 관한 조항	24
일반 조항	27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33



머리말

2002년 이란 의회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이라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근 48년 만에 제정했습니다. FIPPA는 1955년부터 시행되어온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호에 관한 법률(LAPFI)”를 대체하는 법률입니다. LAPFI가 이렇게 FIPPA로 대체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란 국내 법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되었습니다.

이란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 FIPPA를 통해 이루어진 주요 개선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진출 영역을 주요 인프라에까지 확대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부터 “민간참여,” “바 이백” 방식, “연계무역” 및 각종 “건설-운영-양도(BOT)”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 금융조달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식의 투자를 망라함
- 투자 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이란 투자-경제 및 기술 지원기관(OIETA)내에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란 내 외국인 투자 사업에 대한 집중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함
-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외환 거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업무에 융통성을 더욱 부여하여 편의성을 증진함
- 정부 투자자 관계를 관장하는 법적 선택권을 신규 도입함

FIPPA가 이란의 일반 거시경제 체제 및 구조 메커니즘에 걸쳐 일어나는 수많은 전체 개혁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각 부문에 걸친 개혁이 지향하는 바는 외국인 투자 및 내국인 투자 모두를 활성화하고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경제 개혁의 핵심 요소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력 있는 단일 고정세율 25% 적용 및 제조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 수출을 통한 수익에 대한 전액 공제 등 소득세 제도 신설
-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비관세장벽 철폐 및 해외 무역 제도에 더욱 자유화 추진
- 수 개소의 민영 은행 및 기타 제2금융권 신용기관 설립
- 환율 통일 및 외환 제도에 대한 상당한 자유화 진척
- 민영 보험회사 설립을 위해 법률 개혁
- 공공 부문 은행을 포함하여 국영 기업체의 사유화에 대해 지속적인 강조 및 진척

이란 경제의 전 방위에 걸친 개혁 및 혁신 작업,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작업을 통해 OIETAI의 임직원은 더욱 많은 과제와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내 외국인 투자를 책임지는 공식 기관으로서 OIETAI는 경제 및 법률 개혁을 통해 이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대하는 기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세계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을 인식하여,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격동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이란을 장기 투자 플랫폼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희 OIETAI 임직원 일동은 예비 투자자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바이며, 아래 주소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기꺼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98-21) 3311 2917/3390 2115/3311 3455

팩스: (98-21) 3311 2917/3390 1033

웹사이트: www.iraninvestment.org

www.investiniran.ir

이란 투자·경제 및 기술 지원기관 (OIETAI)

테헤란, 이란이슬람공화국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FIPPA)



제1장

정의

제1조

FIPPA에서 사용된 용어와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FIPPA: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자:	이란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 및 이란인으로서 외국 기원의 자본을 사용하며 제6조에 기술되어 있는 투자허가를 받은 자
해외 자본:	<p>현금 및 비현금(현물)을 막론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다양한 형식의 자본으로서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은행 시스템 또는 기타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이전 방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태환화폐 형태의 현금 자금 b) 기계 및 장비 c) 공구 및 부품, CKD 부분품 및 원료, 추가 및 보조 재료 d) 특허권, 기술 노하우, 상표 및 명칭, 특화 서비스 e)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가능 배당금 f) 기타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허용할 수 있는 품목
외국인 투자:	투자 허가를 받은 후, 신설 또는 기존 기업에서 해외 자본을 이용하는 행위
투자 허가:	FIPPA의 제6조에 따라 각 외국인 투자에 대해 발급되는 허가



- 지원기관:** 1974년 7월 15일 제정된 재정경제부 설립 법률의 제5조에 기술
된, 이란 투자-경제 및 기술 지원기관
- 위원회:** FIPPA의 제6조에 기술된 외국인 투자 위원회

제2장

해외 자본 허가에 관한 일반조건

제2조

해외 자본에 대한 허가는 FIPP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기
타 이란의 현행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되, 산업, 광업, 농업 및 서비
스업 등의 생산 활동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입각
하여야 한다.

- a) 경제성장, 기술향상, 품질개선, 고용 및 수출 증대를 기할 것
- b)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에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으며,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이란 경제에 혼란을 주지 않으며, 내국 투자에 의한
생산활동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 c)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란 정부가 허용한 이권을 승계하지 않을 것. 이
권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독점적 지위를 점하게 하는 특권을
말한다.
- d) 투자 허가가 발급된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용역의
가치가 현지 시장에 공급된 상품과 용역에 대해 FIPPA에서 상정하는 비
율은 각 경제 부문별로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하위 부문(분야)



별로는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위 부문 및 각 하위 부문에 대한 투자 범위는 “이행규정”에 정해 두고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유를 제외하고는 수출 목적의 상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는 앞에서 기술한 비율에서 제외한다.

주의: 1921년 6월 6일 제정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률”은 유효하다. 외국인 투자자 명의의 모든 형태 및 한도의 토지 소유권은 FIPPA 범주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3조

FIPPA 규정에 따라 허용된 외국인 투자는 FIPPA가 제공하는 편의와 보호 혜택을 받는다. 그러한 투자는 다음 두 가지 범주에 따라 허용된다.

- a) 민간 부문 활동이 허용된 영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 b) 투자가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의해서만 자본 수익 및 이윤이 발생하며, 또 그러한 자본 수익 및 이윤이 이란 정부 또는 정부 기업 및 은행의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참여,” “바이백” 방식 및 “건설-운영-양도 (BOT)” 방식 등의 범주 내 모든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주의: 본 조 (b)항에 기술된 BOT 방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이윤을 양도하지 않은 한, 피양도 기업의 잔여 자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4조

외국 정부에 의한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대한 투자는 각 건 별로 이슬람평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는 민간의 경우로 간주한다.



제3장

주무 관청

제5조

지원기관은 이란 국내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식 기관이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한다. 자본의 허가, 유치, 이용 및 본국 송환과 같은 사안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의 신청서는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직권상 지원기관의 장인 재정경제부 차관을 그 위원장으로 하고 외무부 차관, 국가관리기획국 부국장,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 부총재, 그밖에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관련 부의 차관들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 위원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설립하여 제5조에서 기술한 바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한다.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투자허가서는 위원회의 승인 후 재정경제부 장관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 발급된다. 투자 허가 시점에서 위원회는 FIPPA의 제2조에 기술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 신청서 수령일을 기산하여 최장 15일 이내에 지원기관은 예비 검토를 마친 투자 신청서를 자체 추천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접수 일로부터 최장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야 하며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이란 국내에서의 외국인 투자 허용 및 활동과 관련된 사안이 신속히 처리



되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상무부, 노동 및 사회부,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 이란이슬람공화국 관세청, 기업 및 산업재산 등록 총괄이사회, 환경보호기관 등 모든 관련 부서는 해당 부서장에 의해 전권을 위임 받은 대표를 지명하여 지원기관에 파견해야 한다. 이렇게 지명된 대표들은 해당 각 부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지원기관과 일대일로 조율하고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해외 자본에 대한 보증 및 이전

제8조

FIPPA에 따른 외국인 투자는 내국 투자에 적용되는 모든 권리, 보호, 편의 사항을 동일하게 제공받는다.

제9조

외국인 투자는, 법 절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차별적인 방식을 통해, 몰수 직전의 투자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되거나 국유화되지 않는다.

주의1: 보상 신청은 몰수 혹은 국유화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의2: 몰수 또는 국유화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FIPPA의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0조

해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국인 투자자에 양도하는 경우 및 이사회
의 승인과 재정경제부의 재가를 받고서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 양도하는 경우는 허용
된다.

제5장

해외 자본의 허가, 유치 및 본국 송환에 관한 규정

제11조

본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한 가지 이상의 방식에 따라 해외
자본을 이란 국내에 유치할 수 있다.

- a) 리알(Rial)화로 태환할 현금 자금
- b) 리알화로 태환할 수 없으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매 및 주문에 직접
사용될 현금 자금
- c) 주무 관청의 평가를 거친 비현금 품목

주의: 평가 방식과 관련된 절차 및 해외 자본 등록은 FIPPA의 이행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

모든 외환 이전에 적용되는 환율 및 해외 자본의 유치 또는 본국 송환 시
점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단일 환율 적용의 경우, 이란 국내 공식 망에서 통용되는
환율과 동일하며, 그 외의 경우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에서 인정하는 자유시
장 환율의 적용을 받는다.



제13조

해외 자본의 원금과 이자 또는 이란 국내에 남은 자본의 잔여분은, 모든 법적 부과금을 지불하고 채무관계를 청산한 후, 위원회의 승인과 재정경제부의 재가를 거쳐 위원회에 3개월 사전 통지를 할 경우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 부과금 및 법정 적립금을 공제한 후 위원회의 승인과 재정경제부의 재가를 거쳐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금 분납금, 관련 비용, 특허권 계약, 기술 노하우, 엔지니어링 지원, 상표 및 상표명, 관리, 기타 관련 외국인 투자 범주 내의 유사한 계약 등과 관련된 지불금의 경우, 위원회의 승인과 재정경제부의 재가를 거쳐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

제13조, 14조 및 15조에서 기술한 이전은 FIPPA의 제3조 (b)항의 규정에 맞추어 이행해야 한다.

제17조

FIPPA의 제14조, 15조 및 16조에서 기술한 이전에 필요한 외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조달해야 한다.

- a) 은행권에서 외국환 구입



- b) 제품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 및 해외 자본을 고용한 기업의 서비스 활동을 통해 획득한 외환
- c)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항의 이행을 위해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리스트에 명시된 허용 상품의 수출

주의1. 위의 방식 중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는 투자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주의2. 제3조 (b)항에서 기술한 투자와 관련하여, 법률 제정 또는 내각 명령의 결과로서, FIPPA의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융 계약 이행이 금지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은 만기 분납금의 최대한도까지 정부가 제공 및 지불한다. FIPPA의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약정 한도는 각료회의에서 승인 받는다.

주의3.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은, 지원기관의 동의와 재정경제부의 재가를 거쳐, 본 조 (a)항에 기술된 이전 가능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외환을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마련해주어야 한다.

주의4. 투자허가서에서 본 조 (b)항 및 (c)항을 명시하여 기술된 경우 그 허가서는 수출허가서로 간주된다.

제18조

투자허가서의 범위 내에서 이란 국내로 유입된 해외 자본 중 미사용 잔여분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수출입 및 모든 외환 관련 법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6장

분쟁해결

제19조

FIPPA에 따른 투자와 관련하여 이란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 정부와의 양자 투자 협정을 비준하는 법률로써 분쟁해결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 국내 법정에 회부한다.

제7장

최종 규정

제20조

관련 집행부처는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FIPPA에 따른 외국인 투자 관련 민간부문의 관리자와 전문가 및 그 직계 가족의 입국비자, 체류허가, 근로 및 취업 허가 등을 사안에 따라 각각 발행할 상호 의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의: 지원기관과 집행부처 간의 견해 차이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에 따라 해결한다.

제21조



지원기관은 투자, 외국인 투자자, 투자기회, 이란 측 파트너, 활동분야 및 기타 지원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제22조

적용 법률에서 부서명이 명기되는 해당 모든 정부 부서, 정부 기업과 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행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고서 및 외국인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여 지원기관이 전 조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재정경제부는 6개월마다 이슬람평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에 FIPPA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지원기관의 업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FIPPA 및 그 시행규칙 제정일자로, 1955년 11월 28일 제정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은 폐기된다. 동 법에 따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해외 자본은 후속 법규정에 FIPPA로 대체하거나 폐기할 것이 명기된 경우 해당 법규정으로 대체 또는 폐기된다.

제25조

FIPPA의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하고 2개월 이내에 각료회의에서 추인한다.

25개 조 및 11개 주의를 포함한 위의 법률은 이슬람평의회 2002년 3월 10일 일요일 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제1조 및 2조의 서두 부분과 제2조의 (c)항 및



(d)항, 제3조의 (b)항, 제17조의 주의2는 국정조정회의의 2002년 5월 25일 토요일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1장

정의

제1조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FIPPA)의 제1조에서 정의한 모든 용어와 표현은 본 규칙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본 규칙에서 사용된 다른 용어와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규칙 : FIPPA의 시행규칙

투자대상회사 : 신설 및 기존 이란 회사로서 해외 자본이 FIPPA에 시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기업

비정부 부문 : 민간 및 협동조합 부문과 비정부 공공기관 및 시설

센터 : FIPPA의 제7조에 따라 지원기관 내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국가의 공식 금융망 : 은행시스템(중앙은행 및 정부 또는 비정부 은행망) 및 비은행권 신용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금융 및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거래소

감사 회사 : 이란 공인회계사 협회 소속 감사회사 중에서 지원기관이 선정한 감사 회사 및 1993년 제정된 “공식 회계사로서



인정된 회계사의 특수 및 전문 서비스 이용을 관장하는 법률”의
대상자, 또는 감사기관

제2장

승인을 받기 위한 투자 방법 및 기준

제2조

FIPPA에 근거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영토 내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FIPPA에 따라 제공되는 편의와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투자의 유입은 해외 자본 유입에 대한 일반 조건에 따라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규칙에 기술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FIPPA 및 본 규칙에 기술된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의 유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외국인 투자 방식, 주안점 및 FIPPA에 따라 제공되는 편의 사항 등에 대한 일람표는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하여 발행해야 한다.

a. 외국인 직접 투자 (FDI)

b. 다양한 유형의 “건설-운영-양도(BOT)” 방식, “바이백” 방식 및 “민간참여”* 방식을 포함하는 계약 방식 범위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

제4조

투자 절차 및 FIPPA에 의한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본 규칙의 제3조에서

* : 비법인 파트너십과 유사함



기술한 투자 방식은 다음과 같은 공통 또는 개별 특징과 이점이 있다.

a. 공통 특징 및 이점:

1.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에 허용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 해외 자본의 유입은 현금 및 비현금(현물)을 막론하고 투자허가서만 받으면 가능하며, 다른 어떠한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3. 각 건 별 외국인 투자 규모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4. 해외 자본은 국유화 및 몰수로부터 보장을 받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5. 자기자본, 이자 및 자본 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허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환의 형태 또는 해당할 경우 상품의 형태로 이전이 가능하다.
6. 투자대상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할 자유는 보장되며, 수출을 금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 제품을 내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그 판매 수익은 이란의 공식 금융망을 통해 외환의 형태로 해외에 이전 가능하다.

b. 개별 특징 및 이점:

1. 외국인 직접 투자 (FDI):
 - 1.1. 투자는 민간 부문 활동이 허용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 1.2. 외국인 지분의 백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계약 거래 범위 내의 투자
 - 2.1. 법 제정 및 내각 명령으로 인하여 금융 계약상의 이행이 금지 및 중단되어 외국인 투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은 만기 분납금의 최대한도까지 정부가 보장한다.
 - 2.2. 정부 기관이 보조금 지원 가격으로 상품과 용역의 단독 구매자 및 공급자가 되는 “B.O.T” 및 “민간 참여” 방식에서 해당 계약의 일방으로



서 그 정부 기관에 의한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생산된 상품 및 용역의 구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제5조

FIPPA에 따른 편의와 보호를 받기 위해 이란에 대한 투자를 신청하는 이란의 자연인 및 법인은 이란 국외에서의 경제 및 상업 활동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FIPPA의 보장 혜택을 받지 않고 이미 이란에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는 허가절차를 완료하면 이미 투자한 주 투자에 대한 FIPPA의 보장 혜택을 받는다. 투자허가서 발급 후, 해당 투자자는 특히 수익금을 이전할 권리를 포함하여 FIPPA가 제공하는 모든 특혜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이러한 형식의 투자는 해외 자본의 유치에 대한 일반 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투자로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제7조

구입지분 및 자본 증식 및 이 양자의 조합을 통한 기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가 절차를 완료할 경우 그러한 투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IPPA의 특혜를 받는다. 그와 같이 창출된 부가가치는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 증대 및 경영 개선, 수출 증대 및 기존 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과 같은 특정 목적을 달성한 결과이다.

제8조

외국인 투자 신청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고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FIPPA의 제2조(d항)에 기술된 비유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 a. 생산할 상품의 용역의 형식과 규모를 포함하여 제한된 프로젝트의 자원 및 그 프로젝트의 이행과 운영을 위한 일정 계획은 내수 또는 수출 판매 계획과 함께 투자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다.
- b. 투자 허가서 발급 시점에서 각 부문 및 하위 부문(분야) 내수 시장에 공급한 상품 및 용역의 가치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는 재정경제부의 경제 담당 차관이 받아 보아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근거는 매 년도 1/4분기 말까지 앞에서 언급한 차관에 의해 지원 기간에 제출한 통계 자료로 해야 한다.
- c. 부문 및 하위부문(분야)은 본 규칙에 첨부된 목록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 d. 각 부문 및 하위부문(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본 조의 (a), (b) 및 (c)항의 조항과 내수 시장에 공급된 상품과 용역의 가치 및 외국인 투자로 인한 상품과 용역의 수출에 대한 투자 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을 준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할 경우에는 투자 허가서를 발급한다.

주의. 투자 허가서의 발급 시점에서 위원회 결정의 기준이 된, 외국인 투자로 인한 상품 및 용역의 가치에 대한 비율 변경 및 내수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치에 대한 변경은 투자 허가서가 발급되고 나면 그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9조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BOT” 계약에서 지정된 이란 측 당사자의 재산권 양도는 계약 기간 중 재산권을 단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그 획득한 권리를 계약 기간 종료 시에 한 번에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BOT” 계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은 위원회의 승인 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방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 기관이 생산된 상품 및 용역의 단독 구매자인 투자 프로젝트 및 투자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상품 및 용역이 보조금 가격으로 공급되는 경우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정부 기관은 기존 법 테두리 한도 내에서 관련 계약에서 결정된 가격과 수량으로 생산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구매를 보장한다.

제3장

허가 제도

제12조

지원 기관은 FIPPA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 및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이란 국내외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 활동을 수행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 기회를 조성하며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고 회의 및 세미나를 조직하며 관련 국제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통합 및 제공하는 데 있어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협력 체재를 구축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위원회는, 해외 자본의 허가, 유치 및 이용과 자본 및 그 수익금의 본국 송



환을 위한 신청을 포함하여 모든 투자 신청에 대해 조사 및 판정을 할 책임을 진다.

제14조

위원회의 연구 회원은 FIPPA의 제6조에서 명시한 4명의 차관이며 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최소한 연구 회원 3명이며 의사 결정은 최소한 3표 이상의 찬성표로 이루어진다. 관련 다른 부의 차관들은 위원회 의장의 초청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다. 이 경우 의사 결정은 다수 득표로 한다.

제15조

투자자들은 관련 양식에서 규정한 서류와 함께 서면 신청서를 지원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의 견해를 청취한 후 최대 15업무일 이내에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투자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를 받은 후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관련 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질의는 투자와 관련하여 그 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를 허용하기로 하여 채택한 결정을 근거로 투자 허가서를 작성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재가 및 서명을 받아 발급한다.

주의: 투자 허가서에는 투자자의 상세 내역, 외국인 투자의 형식 및 방법, 배당금 및 수익금의 이전 방식, 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과 관련한 조건 등이 포함된다.

제4장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제16조

이란 국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촉진, 유치 및 보호 분야에서 지원 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는 관련 부서의 대표들이 파견될 지원 기관 내에 설립해야 한다. 본 센터는 외국인 투자 신청자들이 관련 기관에 대해 문의, 조회할 연락처의 중심점이 된다.

제17조

재정경제부(국가 조세 기관, 이란이슬람공화국 관세청), 외무부, 상무부, 노동사회부, 산업광업부, 지하드농업부,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 기업 및 산업 재산 등록 총괄이사회, 환경보호기관 기타 재정경제부가 정한 집행부서는 해당 부서장의 서명을 받아 지원기관에 전권을 부여 받은 위임 받은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고용 규칙 관점에서 지명된 대표는 해당 각 부서의 직원으로 간주되며 필요에 따라 또한 외국인 투자 건수와 투자자의 조회량에 맞추어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센터에서 근무하며 본 조에 따라 그 대표들에 할당된 직무에 맞추어 해당 조회 사안에 대응해야 한다.

제18조

관련부서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대표들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각 부서의 모든 집행업무 및 서비스 사안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 FIPPA 및 본 시행 규칙에 따라 대표들에게 할당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집행 부서는 그 대표의 의무, 책임 및 권한을 그 기관의 다른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본 센터에서 그 대표에 할당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그 권한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제19조



관련 집행부서는 본 센터에서의 그 업무 및 서비스 활동을 계속 이행하기 위하여 지명된 대표 이외에 동일한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그 부서의 대표가 부재 시 그 직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집행부서는 본 센터에 해당 부서와 관련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대 2명까지 직원을 상위 직급에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및 필요한 조언 제공
2. 설립신고, 환경보호기관의 허가서, 물, 전기, 연료 및 전화 관련 사용허가서, 광산 개발허가서 등 필요한 허가서를 투자허가서 발급 이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확보하는 것과 관련 하여 필요한 업무 조율
3.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각 개인의 비자, 거주 및 근로허가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조율
4.
 - a. 조인트벤처사의 등록
 - b. 수주 등록
 - c. 자본의 유입 및 본국 송환, 관세 및 조세 업무와 관련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투자허가서 발급 후의 외국인 투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조율
5. 외국인 투자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각 부처의 집행부서 대표자들 간의 조정해야 할 필요한 조율
6.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결정 사항의 성실한 이행 감독



제5장

해외 자본의 유치 및 평가에 관한 조항

제21조

현금 또는 비현금(현물)을 막론하고 해외 자본의 유치, 평가 및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현금자본

1. FIPPA의 제11조(a항)에서 기술된 외환 현금 펀드로서 리알화로 태환될 목적으로 1단계 또는 여러 단계로 거쳐 유입된 펀드는, 해당 은행의 허가에 맞추어 리알화로 태환하는 날짜에 외국인 투자자 명의로 지원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FIPPA에 적용을 받게 된다. 유입된 외환의 리알화 등가액은 투자 대상 기업의 계정 또는 투자 프로젝트 계정에 예치된다.
2. FIPPA의 제11조(b항)에서 기술된 외환 현금 펀드로서 1단계 또는 여러 단계로 거쳐 유입되었으나 리알화로 태환되지 않는 펀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외환 계정 또는 투자 프로젝트 계정에 예치된다. 예치일로부터 이러한 펀드는 외국인 투자자 명의로 등록되며 FIPPA의 적용을 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은 지원기관의 감독과 확인 하에 외국인 투자 관련 해외 구매 및 수주에 사용될 수 있다.

주의: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 이전/인출과 관련하여 이란의 공식 금융망은 송금자명, 외환금액, 외환의 형태, 수령일, 태환일, 투자대상 기업명 그리고 리알화로 태환일 경우 수입 외환의 리알화 등가액을 포함하여 인출 상세 내역을 지원기관에 직접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b. 현물 해외자본(비현금)

현물해외자본은 그 유치, 평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FIPPA의 제1조 해외자본의 용어 정의에 따라 (b), (c) 및 (d)항에서 언급한 항목을 포함한다.

1. 위의 (b) 및 (c)항에서 기술한 현물 해외자본(기계류, 장비, 공구 및 부품, CKD 부분품, 원료, 추가 및 보조 재료 등)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비현금 해외자본 항목의 수입에 대한 지원기관의 동의를 통지 받은 후, 그 수주 건을 통계치에 등록하고, 수입 항목의 평가 및 인도를 위해 관련 세관에 해당 사안에 대해 연락을 취해야 한다. 수입 항목의 가액에 대한 세관의 평가는 수용 가능한 가액으로 간주되며,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수입면장에 기재된 가액에 운송 및 보험료를 더한 액수를 외국인 투자자 명의로 등록하며, 통관일자로 FIPP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세관 평가액과 위원회에서 승인한 (비현금 항목의) 명세서 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세관 평가액을 지원기관 및 기업 및 산업재산 등록 총괄 이사회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주의1. 상무부와 지원기관은 본 시행규칙의 공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현금 해외자본 항목의 수주에 대한 통계자료 등록을 위한 특별 양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의2. 이란이슬람공화국 관세청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중고 기계류 및 장비의 가치를 중고품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주의3. 이란 국내로 수입된 비현금 해외자본이 결함, 훼손, 사용불능 및 위원회가 승인한 명세서에 신고된 규격과의 불일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안



은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에서 확인하지 않은 수입품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수입 자본 계정에서 공제된다.

2. FIPPA의 제1조 (d)항에서 기술한 자본 항목(특허, 노하우, 상표 및 명칭, 특허 서비스)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한 다음, 위원회에 기술 및 서비스 계약에 따른 계약의무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총액은 위원회가 해외자본으로 등록하며, 또한 위원회에서 기안하고 재정경제부가 승인하는 명령의 범위 내에서 FIPPA의 적용을 받는다.

제6장

자본 및 자본 수익의 본국 송환에 관한 조항

제22조

자본, 이자 및 FIPPA의 적용을 받는 자본의 가치 증대에서 얻는 수익을 이전하기 위한 모든 신청은 이란 공인회계사 협회 소속회원사인 감사회사의 보고서로써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전의 한도는 모든 법적 부과금을 공제한 다음 해당 감사회사가 인증한 금액까지 유효하다.

제23조



자기자본, 이자 및 FIPPA의 제3조 (a)항에 기술된 투자와 관련된 자본의 가치 증대에서 얻는 수익을 이전하는 것은 외환의 형태 및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서는 인가 받은 상품에 대한 수출의 형태로써 허용된다. FIPPA의 제3조 (b)항에 기술된 투자관련 자본 및 이자의 본국 송환은 제품의 수출에서 획득한 외환 및 투자 대상 기업이 제공한 용역에서 획득한 외환 및 기타 인가된 상품의 수출을 통해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에 속한 자기자본, 수익금액, 자본 이익의 최근 현황에 대한 감사 회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위원회는 이전가능 금액을 결정하며 재정경제부의 재가를 받아 각 건 별로 본국 송환 허가서를 발부한다.

주의. FIPPA의 제3조의 (b)항에 기술된 투자와 관련하여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자금의 이전을 위한 외환 제공이 위원회의 의견상 적절하며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외환은 은행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제24조

FIPPA의 제17조 (b)항 및 (c)항에 기술된 투자 허가서의 경우, 이 허가서는 수출허가서로 간주해야 하며 투자대상 기업은 그 수출 수익을 현지 및 외국은행의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할 수 있으며 투자 허가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그 계정에서 직접 인출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인출 가능 액수를 초과하여 획득한 외환은 이란 외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대상 기업은 관련 액수를 지불한 다음, 수출증서 제출과 함께 서면으로 지원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 투자에 의한 수출로 획득한 외환은 위원회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현행 및 미래의 정부 규정에 따라 수출 수익을 재도입해야 하는 약정 등과 같은 수



출제한 법규 및 외환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26조

법적 제한 및 정부의 규정에 의한 제한의 결과로 투자대상 기업이 그 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제한 및 정부의 수출 금지 결정이 시행되는 한, 해당 투자대상 기업은 그 제품을 내수 시장에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외환 요건의 리알화 등가액을 제공함으로써 은행권으로부터 필요한 외환을 구매 및 이전하며 (원할 경우) 인가된 상품을 수출할 권리를 갖는다.

제27조

FIPPA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전 가능한 자금은, 위원회의 확인과 재정경제부의 재가를 받은 다음, 외국인 투자자 은행권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또 실효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은 이 목적상 필요한 외환을 은행권에 마련해두어야 한다.

제28조

외국인 투자자가 이전 가능한 자금을 관련 행정수속을 마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자금은 FIPP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자금과 관련하여 FIPPA의 적용을 계속 받으려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외국인 투자자는 원할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FIPPA의 제13조, 14조 및 15조에 따라 이전 가능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동일 기업에 대한 증자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있으며, 투자 허가서를 받기 위한 법적 수속을 마친 다음, 새로운 투자에 이용할 수도 있다.

제30조

이란 정부는 이란이슬람공화국 헌법 제138조를 준수하며 (이에) 투자에 관한 고등 평의회 소속 각료들에게 FIPPA의 제17조 주의2에 따라 허용 가능한 약정의 범위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한다. 위원회는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자에 관한 고등 평의회가 수용할 수 있는 약정 한도 내에서 만기 약정액의 최고 한도액까지 관련 금융 계약의 이행 금지 및 중단으로 인한 손실의 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본 조에서 기술한 권한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위의 평의회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한다. 채택된 결정은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각료회의 내부규정 제19조에 따라 발표될 수 있다.

제31조

외국인 투자자가 이란에 대한 투자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의 조건에 따라비상업적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증권에 따라 투자자에 지급한 금액으로 인해 해당 보험기관이 투자자를 대리하여 변제하게 되고, 손실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피대리인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이 대리변제는, 제4조 및 10조의 조항에 적절히 부합되지 않는 한, 자본의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장

일반 조항

제32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허가서의 통보일로부터 프로젝트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그 자본의 일부를 이란 국내에 유입하여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확고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정한 기간 내에 이란 국내에 자본의 일부를 투자자가 유입하지 않을 경우 및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그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 그 투자 허가서는 무효로 간주된다.

제33조

외국인 투자자는 그 명칭, 법적 지위, 국적의 변경 및 지분의 30%를 초과하는 변동 사항 등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34조

외국인 투자를 통해 이란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에 적절한 규모의 토지는 그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 허용된다.

제35조 *

* 본 조는 2005년 1월 25일자 각료회의 명령 제H31755T/54603에 의하여 FIPPA의 시행규칙의 제35조를 대체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무부, 내무부, 노동사회부, 이란이슬람공화국 치안대(경찰) 등 관련 집행 부서는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FIPPA의 적용을 받는 투자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 임원, 전문가 및 그 직계 가족의 비자, 체재허가, 근로허가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외무부는 입국비자와 관련하여 각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치해야 한다.

- a. 외무부는 지원기관의 확인에 따라, 이란 국외의 이슬람공화국 재외공관과 연락을 취하여 각각의 경우에 입국과 3개월 간의 체재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기간 3년의 복수 비자를



외무부, 내무부, 노동사회부, 이란이슬람공화국 치안대(경찰) 등 관련 집행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FIPPA의 적용을 받는 투자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 임원, 전문가 및 그 직계 가족의 비자, 체재허가, 근로허가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외무부는 지원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이란이슬람공화국 재외공관과 연락을 취하여 관련자에 대해 요청되는 비자의 유형에 따라 매 입국 시 3개월 간의 체류를 허용하는 단수 입국 비자 또는 복수 입국 비자 (기간 3년)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 b) 투자 목적의 입국비자를 교부 받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들은 이란 국내에 입국한 후, 이란이슬람공화국 치안대(경찰)에 조회하고 FIPPA에 따라 해당 투자의 적용을 받음을 확인하는 지원기관의 정식 통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기간 3년의 체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노동사회부는 체재허가 발급에 이어 해당 개인에게 근로허가를 발행해주어야 한다.
- c)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러한 3년 기간의 체재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이란 출입국에 필요한 입국 및 출국 비자 발급을 면제 받게 된다.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 b. 이란 국내로 입국한 후, 입국자들은 외무부의 여권 및 비자과에 조회하고 지원기관의 정식 통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체재허가 기간을 일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체재기간 연장은 “일년 유효의 복수비자”를 나타내는 인증날인을 받아 그 당사자는 입국 및 출국 비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제36조**

FIPPA의 제21조에 따라 정보의 일반 공개와 관련하여 지원기관의 책임은 사업상 발행할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된다.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제37조

지원기관과 위원회는 FIPPA 및 본 시행규칙에서 의도하는 기능 및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란공인회계사 협회 소속 회원사인 감사 회사 및 기타 유자격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의 자문 및 전문적 특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8조

본 시행규칙의 조항과 배치되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각료회의의 명령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본 시행규칙의 발효일로부터 폐기된다.

FIPPA의 제2조 (d)항에서 기술된 부문 및 하위 부문

부문	하위 부문
농업	- 농경 및 원예 - 목축 및 양잠 - 임업 및 방목 - 어업 및 수산양식업
광업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추출 및 이송) - 기타 광업 (개발, 추출 및 가공)
산업	- 식품, 음료 및 연초 - 직물, 의류 및 가죽 - 셀룰로오스(목재, 제지 등), 인쇄 및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제품, 석유 파생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 석유 및 석탄 이외의 비금속 광물 - 기초금속 - 운송 장비 및 자동차 - 전기 및 전자 기계류와 장비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통신 장치 및 기기) - 전기 및 전자 기계류와 장비 (달리 분류되지 않은 품목) - 의료, 광학 및 정밀 기기 - 재활용
물, 전기 및 가스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의 집수, 정수, 이송 및 분배 - 발전, 송전 및 배전 - 천연가스 정제 및 분배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 건축 및 주택 - 건설자재
교통 및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운송 - 도로 운송 - 배관 운송 - 수로 운송 - 항공 운송 - 지원 서비스 - 우편 및 통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서비스 (보험, 은행 등) - 관광 - 공공업무 - 도시 관련 서비스 - 교육 및 연구 - 기타 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외국인 투자 방법, 특징 및 FIPPA에 의해 제공되는 편의사항

투자방법	투자영역	투자유입 형식과 방법 (현금 및 비현금)	투자규모 및 자본율	자본보증/보장	외환 이점	
					자기자본/이자	기술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금액
외국인직접투자 (FDI)	전 영역을 민간부문에 개방	- 투자허가서 상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위원회(FIB)의 승인 조건 - 그 밖의 허가 불필요	제한 없음	- 몰수 및 국유화 조치에 대한 보상을 보장 - 수출 보장 및 수출금지로 인한 외환 획득 보장 - 내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 부여	- 외환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음 - 수출 목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품의 형태에 따른 제한 없음	- 외환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음 - 수출 목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품의 형태에 따른 제한 없음
계약방식: “건설-운영- 이전”(B.O.T.)방식	전 영역을 민간 및 정부 부문에 개방	- 투자허가서 상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위원회(FIB)의 승인 조건 - 그 밖의 허가 불필요	제한 없음	- 몰수 및 국유화 조치에 대한 보상을 보장 - 수출 보장 및 수출금지로 인한 외환 획득 보장 - 내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 부여 - 법 제정 또는 내각 명령에 따른, 금융계약상의 이행 금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장 - 정부 기관이 생산된 상품 및 용역의 단독 구매자인 경우, 상품 구매 보장	- 외환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음 - 수출 목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품의 형태에 따른 제한 없음	
바이백(Buy-Back)	전 영역을 민간 및 정부 부문에 개방	- 투자허가서 상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위원회(FIB)의 승인 조건 - 그 밖의 허가 불필요	- 투자 규모와 관련하여 제한 없음 - 자본율 해당 없음	- 몰수 및 국유화 조치에 대한 보상을 보장 - 수출 보장 및 수출금지로 인한 외환 획득 보장 - 내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 부여 - 법 제정 또는 내각 명령에 따른, 금융계약상의 이행 금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장	- 상품의 형태에 따른 제한 없음	

민간참여	전 영역을 민간 및 정부 부문에 개방	- 투자허가서 상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위원회(FIB)의 승인 조건 - 그 밖의 허가 불필요	- 제한 없음	- 몰수 및 국유화 조치에 대한 보상을 보장 - 수출 보장 및 수출금지로 인한 외환 획득 보장 - 내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 부여 - 법 제정 또는 내각 명령에 따른, 금융계약상의 이행 금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장	- 외환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음 -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품의 형태에 따른 제한 없음	- 외환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음 -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품의 형태에 따른 제한 없음
------	----------------------	--	---------	--	--	--

정의: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또는 신규 이란 회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방식: 여기에는 계약 쌍방의 계약방식에만 기준으로 해외자본을 이용하는 일단의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건설-운영-이전: 이란 측 일방과 계약방식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자체 책임하에 프로젝트 회사로서 이란 기업 설립 및/또는 이란 내 지사 설립하는 방식을 통하여 투자를 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투입할 현금 및 비현금 금융자원을 마련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 착수 및/또는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된다. BOT 방식은 각각의 특징이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바이백 계약: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에 건설, 확충 및 개장을 위한 현금 및 비현금 금융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방식에서는 자본의 본국 송환은 투자대상 기업이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및/또는 다른 상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간참여: 법인 설립이 필요 없는 공동활동을 구현하기로 체결한 계약방식으로서, 파트너십 참여 당사자들의 이윤 배당 및 투자 수익은 그 계약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민간 참여”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투자에서 이득을 얻을 자격을 가는 모든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사업을 망라한다. 어떤 경우에도 “민간 참여”와 관련된 모든 금융 선례는 당사자들의 장부에 기재되어 이란에 등록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0년도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법”의 제7조에 따라 이란 투자·경제 및 기술 지원기관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이란 내 외국인 투자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외무부, 상무부, 노동사회부, 국세청, 이란이슬람공화국 관세청, 중앙은행, 기업 및 지적 재산 등록 총괄이사회, 환경보호기관 등 관련 집행부서에서 전권을 위임 받은 대표들이 센터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들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당 각 부서별로 위임 받은 절차 및 서비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란 내 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 필요한 안내 제공 및 정보 배포
- 투자 허가서를 발부 받기 전 관계당국으로부터 설립신고서, 환경보호허가서, 상수도·전기·연료·전화 신청, 탐사 및 광산개발 허가 등을 발급 받는 일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 관련 사안에 대해 필요한 업무 협조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비자, 체재 및 취업 허가 고용근로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업무 협조
- 조인트 벤처 사 등록, 기계 및 장비 수입 허가 등록, 자본의 유입 및 본국송환, 세관, 조세 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투자 허가서를 발부 받은 후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필요한 업무 협조
- 외국인 투자가 포함된 프로젝트에 따른 요청 및 신청과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 간의 업무 조율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결정 사항 이행에 대한 총괄 감독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외국인 투자자가 모든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여러 다른 집행기관에 문의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 전 단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창립 이래 센터가 거둔 실적을 통해 센터 설립이야말로 외국인 투자 사업 관련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더욱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센터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재정경제부
이란 투자·경제 및 기술 지원기관